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3. 5 선고 2018가단595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3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9. 1.부터 2008. 8. 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조유진

별지